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“연돌”을 “굴뚝”으로, “마대”를 “자루”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,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(併記)하는 등의 방법으로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등 5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,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안
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5개 고용노동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7조제2항 중 “보험금잔고”를 “보험금잔액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8호서식 앞쪽 중 ② 훈련과정 정보란의 “지불한”을 “지급한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중 작성 방법 1-2의 “지불한”을 각각 “지급한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8호의3서식 중 훈련과정 정보란의 “지불한”을 “지급한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8조 중 “마대”를 “자루”로,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제2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준수하여야”를 “준수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마대”를 “자루”로 한다.

제2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준수하여야”를 “준수해야”로 하고, 같은

조 제4호 중 “명찰을”을 “이름표를”로 한다.

제3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슬라브”를 “슬래브”로, “준수하여야”를 “준수해야”로 한다.

별표 16 제17호 중 “연돌”을 “굴뚝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0 제2호 영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다리 건설등의 공사의 주요 작성대상란 나목3) 중 “상부슬라브”를 “상부슬래브”로 한다.

제4조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5항제2호 중 “지불한”을 “지급한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근로 조건의 ㉔임금 및 지급방법란의 “직접 지불”을 “직접 지급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근로 조건의 임금 및 지급방법란의 “직접 지불”을 “직접 지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7조(기금지급의 위탁) ① (생략)	제127조(기금지급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<u>보험금잔고</u> 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은행이나 체신관서의 장이 협정으로 정하는 대로 그 은행이나 체신관서로부터 예입이자를 받을 수 있고,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따른 취급 손해비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<u>보험금잔액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8조(포장기계의 덮개 등) 사업주는 종이상자· <u>마대</u> 등의 포장기 또는 충전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<u>하여야</u> 한다.	제128조(포장기계의 덮개 등) --- ----- <u>자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야</u> -----.
제201조(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)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·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준수하여야</u> 한다.	제201조(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준수해야</u>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마대</u> ·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	3. <u>자루</u> ----- ----- -----
제233조(가스용접 등의 작업)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, 불활성 가스 및 산소(이하 “가스등”이라	제233조(가스용접 등의 작업) --- ----- -----

한다)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·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·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준수하여야</u> 한 다. 1. ~ 3. (생략) 4. 사용 중인 가스등을 공급하 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그 밸브나 콕에 접속된 가스 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<u>명찰을</u> 붙이는 등 가스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 기 위한 표시를 할 것 5. ~ 7. (생략) 제336조(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 사항) ① 사업주는 기둥·보· 벽체·<u>슬라브</u> 등의 거푸집동바 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 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<u>준수하여야</u> 한다. 1. ~ 4. (생략) 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준수해야</u> ----- 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<u>이름표를</u> ----- ----- ----- 5. ~ 7. (현행과 같음) 제336조(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 사항) ① ----- ----<u>슬라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준수해야</u>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) ① ~ ④ (생략) ⑤ 제2항,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할 환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해외지점·출장소·영업소 등에서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그 외국 의료기관이 진료비 수납영수증을 발급한 시점의 기준환율 ⑥ (생략)	제19조(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<u>지급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⑥ (현행과 같음)